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내부제보 수행과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제보 접수, 처리,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내부제보 수행과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제보, 접수, 처리,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 규정 및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리)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제보'라 함은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임직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회사의 예산사용, 회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규정 등에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제 1호과 제 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제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회사에 부패행위를 제보한 자
 - ② 피제보자의 소속 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등에 부패행위를 제보 한 자
 - ③ 회사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제보한 자
4. "협조사"란 제보자 외에 제보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비밀보장 의무자"라 함은 내부제보의 내용을 접수, 조사하는 자 및 직, 간접적으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의 내용 등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6.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 부서장이나, 회사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제 2 장 운영

제 4 조(임직원의 청렴의무)

1.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제보자의 소속 회사, 지도, 감독, 기관 등에 반드시 제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책임자 지정)

1. 준법지원인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제보의 상담접수 및 처리, 제보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을 다한다.
2.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제보의 상담접수 및 처리,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6 조(제보 대상 및 의무)

1. 내부자 제보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 ②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나 특권적 행위
 - ③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④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2. 내부자는 제1항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없이 준법지원인에게 제보하여야 하며,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 문책할 수 있다.

제 7 조(제보의 상담 및 접수)

1. 준법지원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제보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회사 외의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준법지원인은 부패행위 제보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하게 하여야 하며, 제보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제보시에는 제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제보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5. 준법지원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제보의 조사, 처리)

1. 준법지원인은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하여 제보자를 상대로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의 경위 및 취지 등 제보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준법지원인은 제보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준법지원인은 제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준법지원인은 접수한 제보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지도, 감독기관 등에 직접 제보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5. 준법지원인은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보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제보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제보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제보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6. 내부제보가 접수된 경우 준법지원인은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제보사항은 준법지원인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제보사항이 감사부서 및 유관부서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8. 준법지원인은 제보사항을 조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제보의 취하)

1. 준법지원인은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제보의 종결)

1. 준법지원인은 제보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① 제보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② 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③ 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보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 ⑤ 제보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⑥ 그 밖에 제보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제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신분비밀보장)

1. 비밀보장 의무자는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첨부 1)를 작성한다.

2. 임직원은 누구라도 제보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제보 등을 한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②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③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④ 성과평가, 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등 차별지급
 - ⑤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 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⑥ 주의, 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야기
 - ⑦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⑧ 인, 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⑨ 물품, 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⑩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2. 임직원은 부패행위 제보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지원인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법지원인은 제보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인,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 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신변보호)

준법지원인은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14 조(책임의 감면 등)

1. 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제보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협조자 보호)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 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제보자 시상)

1. 제보로 인해 회사에 사고방지, 손실예방, 복무기강 확립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표창, 상여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제보자를 시상대상자로 하고, 공동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공동제보자 전원을 시상할 수 있다.
3. 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진실규명에 기여하거나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사고예방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시상할 수 있다.
4. 시상시에는 기여정도를 평가하여 시상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5. 시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준법지원인이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

제 17 조(징계 등)

1. 대표이사는 이 규칙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 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②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③ 제12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2. 대표이사는 제8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준법지원인은 제보 상담, 접수, 조사, 처리 및 제보자보호과 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 조사, 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규칙적용)

1. 부패행위 제보의 상담, 접수 및 처리, 제보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2.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제보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첨부]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내부제보 제도에 의한 제보를 접수, 조사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내규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